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가합602723 판결 [지급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서울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호, 채은혜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박재욱

변론 종결2022. 3. 3.

판결 선고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에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2. 1. 22.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았던 서울 C 일대 D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운영회사를 소외 회사, 사업위탁기간을 2002. 1. 1.부터 2011. 12.

31.까지(이후 사업위탁기간은 추가·보충협약을 통하여 2020. 9. 30.까지 연장되었다)로 정한 내용의 'D시설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놀이동산을 위탁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관리위탁료 및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8. 11. 29. 소외 회사에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의 사용료 2,843,857,860원(= 관리위탁료 1,816,386,990원 + 토지사용료 1,027,470,870원)을 2018. 11. 3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9. 2. 26. 위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한 지급보증위탁을 받아 2019. 3. 8. 원고에게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보증 상대처를 원고로, 보증대상을 "특정채무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계약이행보증"으로,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로 정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다항의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① 2019. 11. 29. 다시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의 사용료 2,182,086,240원(= 관리위탁료 1,774,191,240원 + 토지사용료 407,895,000원)을 2019. 12. 14.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이하 '2019. 11. 29.자 납부통지'라 한다)를 하고, ② 2019. 12. 12. '2019. 10. 1.부터 2020.

9. 30.까지의 사용료 2,449,878,060원(= 관리위탁료 1,960,183,330원 + 토지사용료 489,694,730원)을 2019. 12. 27.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이하 '2019. 12. 12.자 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각 납부통지에 따른 이행을 전부 거절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20.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상 보증금액 28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 사용료와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2. 1. 22.자 실시협약

제28조(토지 및 관리위탁료 등 납부)

① 협약체결 당해 연도의 토지사용료 및 관리위탁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외 회사가 제시한 2,018,238,220원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토지사용료는 재산가액 확정 시 정산한다).

② 2차 연도부터 토지사용료는 전년도 재산가액의 50/1000의 금액을 원고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매년 1월 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재산가액 확정 시 정산한다. (생략)

③ 토지사용료 및 위탁료는 매년 1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생략)

2017. 2. 24.자 보충협약

제1조(미납 토지사용료와 관리위탁료 등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5301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의 토지사용료 및 관리위탁료 등 미납금 2,725,098,360원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아래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소외 회사와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017. 2. 26.	1,362,549,180원
2	2017. 6. 15.	1,362,549,180원

제2조(위탁운영 기간 연장 등)

① 소외 회사는 제1조 기재 금전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중략) 위탁운영 기간을 3년 7개월 연장하여 2020. 9. 30.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연장된 위탁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위탁료와 토지사용료는 2002. 1. 22.자 실시협약 제28조에 따른다.

④ 소외 회사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2020. 9. 30.까지 연장된 위탁운영기간 동안의 사용료(관리위탁료 + 토지사용료)를 선납한다.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지급보증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보증 범위는 지급보증서 등에 표시된 보증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17. 2. 24.자 보충협약과 관련한 지급보증위탁을 받아 2019.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서 내용에 따른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주채무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 보증기간인 2019. 3. 8.부터 2020. 3. 6.까지 사이에

보증금액인 280,000,000원 이상의 주채무가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협약은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으로서, 그 사용료채권의 발생 및 기한은 위 보충협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② 2017. 2. 24.자 보충협약 제2조 제4항은 사용료 선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보충협약 제2조 제2항이 준용하는 2002. 1. 22.자 실시협약 제28조 제3항은 '매년 1월말'을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인 2020. 1. 31.경 일정 액수의 사용료 지급채무가 발생하고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

③ 2019. 11. 29.자, 2019. 12. 12.자 각 납부통지는 공법상 계약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로 보이는데, 위 각 납부통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인 2019. 12. 14., 2019. 12. 27. 일정 액수의 주채무가 발생하고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

④ 2002. 1. 22.자 실시협약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시한 최초 1년간 사용료가 2,018,238,220원에 이르고, 이를 1달간 사용료로 환산하면 약 168,186,518원(= 위 2,018,238,220원 ÷ 12달)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5301호 사건에서 2014. 8. 27.부터 2015. 8. 26.까지 1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제외한 관리위탁료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액수가 1,700,651,000원에 이르고, 이를 1달간 관리위탁료로 환산하면 약 141,720,916원(= 위 1,700,651,000원 ÷ 12달)에 이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 보증금액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채권의 이행청구기간을 정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금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보증채권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지급보증계약의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일종의 소멸시효기간 단축약정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3217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보증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제7조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 위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 보증기간의 말일인 2020. 3. 6.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0. 6. 15. 피고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용료 및 연체료에 관한 지급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행청구 및 채권가압류집행을 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1. 30., 2019. 12. 12., 2019. 12. 23., 2020. 1. 12., 2020. 3. 5. 소외 회사에 각 미지급 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 원고가 2020.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1613호로 2017. 2. 24.자 보충협약에 따른 사용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주식회사 A에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일단 이유 있다.

2) 이에 피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40조가 임의규정인데,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 민법 제44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40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재항변이 이유 없다고 재재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그

이행청구기간을 약정함으로써 민법 제440조를 배제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재재항변은 이유 있다.

①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참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는 "보증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제7조도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③ 지급보증계약의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보증채무자로 하여금 장차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등 채무부담의 확대를 방지하고 아울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데(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32170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도 민법 제44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지급보증계약의 보증채무자는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어 장차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리라 신뢰하고, 조속히 지연손해금 등 채무부담의 확대 방지조치를 취할 기회 및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절차적 기회를 잃게 되는데, 이는 이행청구기간을 정한 계약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착오취소·사기취소 항변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봉기

판사김성준

판사이진희